

기안용지

분류기호 문서번호	도개415~ 69 (전화번호)	전결규정 전결사항
처리일자	제2부시장	
시행일자	시행	
보존년한	결재 815.6.27 제2부시장	
보조기관	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과장 지역계획계장	법무담당관 (고시안상사) 종합계획계장 가로계획계장
기안책임자	권완 상.6.24 정관영	조
경수참	유신조	발신
제 목	각안참조	1975.7.8 서울도시계획 관인
제 1 안 내부결재 1. 시내 용산구 한강로3가, 원효로3가 일부지역은 건설부 도시제 345호 (70.7.20)로 상업지역으로 용도 변경필과 등 시 기존 시장을 용산 유통 센터 (중앙 도매 시장) 용지로 사용토록 되었는데 농수산물 대행 업체인 서울 청파 주식회사에서 현재 기존 시장을 도시계획법에 의한 중앙 도매 시장으로 시설 결정키 위하여 당시 제 7차 (75.6.19) 도시계획 위원 회에 상정 심의한 바 별첨 심의안 및 회의록과 같이 심의 통과 되었으므로.		
2. 본 시설은 도시계획법 제10조의 규정내 의한 도시계획법 제12조와 제13조 규정 및 건설부 도시제6호 (74. 1.5)의 권한 위임 사항에 따라 별안과 같이 이를 고시 하고 아래와 같이 시행코자 하오니 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
. . . 가. 시설 조서 . . .		

제 목 관(시)보 게재 의뢰

1. 다음과 같이 관(시)보 게재를 의뢰하오니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관(시)보 게재구분 : 고 시

나. 관(시)보 게재건명 : 도시계획시설(중앙도매시장) 결정 및 지적승인

다. 법적 근거 :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증법제13조

첨 부 고시문 사본 2부(1부)

제 5 안

수 신 : 용산구청장

발신 시장

제 목 : 등 권

1. 귀구 관내 도시계획시설(중앙도매시장) 결정이 별첨 고시문 사본 및 도면 표시와 같이 고시되었기 통보하니 관계 도서를 정리한 후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이게 하고 래지 증명 발급 등 제반 업무에 착오 없기 바랍.

첨 부 고시문 사본 및 도면 각 1부

제 6 안

수 신 : 상정과장

발신 과장

제 목 : 등 권

1. 당시 관내 도시계획시설(중앙도매시장) 결정이 별첨 고시문 사본 및 도면 표시와 같이 고시되었기 통보하오니 사업 시행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.

~~첨 부 고시문 사본 및 도면 각 1부~~

2. 본시장 중앙관측간선 도로의 기능에 저해 되는 코상주차 및 하역 도로점용등을 야기 시키는 일이 없도록 허가시 별도 조건을 설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첨부: 고시문 사본 및 도면 각 1부